

#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「철도안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

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건축처 조규영 과장(02-6311-9898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<p>제47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</p>	<p>제47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 <u>단, 열차의 안전 운행 등 불가피한 경우 열차 운행 중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.</u></p>	<p>※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사항이 추가되어 안내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‘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’이라고 안내시점을 제한하는 것은 철도운영자의 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배제하는 것으로 열차의 안전 운행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</p>